67. 폐비닐 분류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성별 여 나이 70세 직종 폐비닐 재생업 업무관련성 낮음

- 1. 개요: 근로자 강○○은 1998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강○○은 66세 때인 2000년 6월부터 폐비닐 재생업체인 우창산업에 입사하여 폐비닐 분류작업을 하였다. 상기 근로자 본인이 담당한 작업은 외부에서 가져온 폐비닐에 붙은 테이프와 재생할 폴리에스터 비닐을 손으로 분리하는 것이었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였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모두 합해 1시간이었다. 상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좁은 사업장내에서 폐비닐의 분리공정과 가공공정이 같이 공존해서 악취와 분진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실제 조사에서도 작업현장에서 재생 기계 가동시 매연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정도였으며 적지 않은양의 검댕이 기계 배연구 근처 벽체에 묻어있었다. 본인의 작업위치는 근로자 중 기계와가까운 가장 안쪽에 배치되었으며 배연구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현장에는 호흡기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았고 창문을 여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환기장치는 없었다. 특히 겨울엔 문을 닫고 작업하므로 유해가스가 배출되기 어려웠다고 한다.
- 3. 의학적 소견: 상기 근로자는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 30대에 결핵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서 치료해서 완치된 적이 있다. 97년 7월 호흡곤란 등으로 C병원에 내원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던 중 2006년 1월 4일 밤 야간에 숨이 차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2006년 1월 7일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 소견상 중등도 중증 폐쇄성 기도질환 소견을 보였다.
- 4. 결론: 근로자 강○○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 ① 상기 근로자가 61세 때인 1997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진단하에 사업장 근무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던 상태로,
 - ② 1994년부터 3년간의 청소작업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 ③ 2000년부터 6년간의 폐비닐 분류작업 중 폴리에틸렌 재생으로 흄이나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 ④ 2004년 3월 이후 폴리에틸렌 가공작업으로 인해 노출되었으나 간헐적 치료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임상경과와 다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비닐 재생 작업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